

강령 · 당헌

2024. 5.



강령



전문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 성과를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대한민국은 분단과 전쟁의 역경을 딛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모든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 경제위기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제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첫째, 특권과 차별,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한다. 둘째,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감염병,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넷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진정한 성찰과 쇄신,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생명 공동체가 번영하며,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대전환 시대에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포용성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구축한다. 혁신을 촉진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 협업을 유도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며,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포용경제 기반 구축

여러 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더불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고비용, 불공정 등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개발과 시장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여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한다.

혁신성장 강화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한 연계성을 강화하여 혁신형 선도경제로 도약한다. 미래 핵심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실패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창의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여 해당 기업이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여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한다. 총수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책임경영제도 강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편취 방지, 지배구조 개

선,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혁신으로 산업 경쟁력과 실물지원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고용친화적 성장을 추진하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재교육 체계 강화로 급격한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다. 공정임금 구축과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누구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직과 은퇴,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포용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합리적인 탄소중립전략을 수립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가계부채 문제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토지는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의 기본요소이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편중된 토지보유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토지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투기수요 억

제, 주택수급 균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임차인 권리 보호 등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청년과 노인, 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사회적 금융 조성, 공공기관 사회책임 조달 강화 등 민관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재생과 지역순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농수축산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 주거, 의료, 교육 등 낙후된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농수축협의 활성화,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 구축

시장경제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주체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 납세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탈루와 탈세를 막는다.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누진적 보편증세 및 조세지출제도를 개편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기반을 확충한다. 부동산세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개편한다. 국가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조세 및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의 계속고용 확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 노동시간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노·사·민·정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보건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를 확대·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체계를 확충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노동자의 인격과 노동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실현되는 곳인 직장과 일터에서 참여와 존중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든다.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차별과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 한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여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교섭을 지원한다.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노동 참여를 보장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 3 정치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소통과 연대,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정치를 추구한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선다. 시민과 당원의 일상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당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해 시민중심 정당을 구현한다.

정치적 다원주의 구현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다양성, 비례성, 통합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용적 정치제도를 지향한다. 차이와 다양성 속에서도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중심의 정당구조를 타파해 보다 분권화된 정당체계를 지향한다. 여성과 청년,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

시민중심 민주주의 실현

시민들이 청원과 숙의 등을 통해 당과 의회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한다. 당원과 당원, 당원과 시민간의 상호소통과 정보의 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적 토론풍화를 형성한다. 시민과 당원들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 전 주기에 맞는 시민정치교육을 확대한다.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배격하고 상호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한다.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국민의 상식과 민심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한다.

권력기관의 개혁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최우선하여 일하며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개혁한다. 국가기관의 권력남용과 특권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특히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지속적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공직사회의 혁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실현한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모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공직자가 청렴, 능력, 민주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공직교육을 강화한다.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과정에 더 많은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과 시민에 대

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당과 당원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AI) 등을 당의 일상 업무와 정치과정에 적극 활용해 더 쉽고 편리한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화한다.

| 4 | 자치분권·균형발전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해 국민 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공평·공유·협동·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한 발전을 약화시키는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을 극복하고,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실현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국가균형발전으로 국토의 다양성 실현

국가의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역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다양한 지역이 상생 협력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열린 국토를 지향한다. 국가발전의 편익을 고르게 누리는 동반 번영의 원칙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정을 집행하고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교통·통신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토공간의 기회균등성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산업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

지역주민, 특화산업, 지역고유자산, 일자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기반 산업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발전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신산업 육성, 지역대학 중심 인재육성, 창업역량 강화, 신규일자리 창출을 선순환으로 연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광역 협력체계 강화

독자적인 경제발전 기반 구축 및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 행정체계를 촉진하고 강화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및 생산기반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도심부와 교외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다양한 충위의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 각 지역이 세계적 수준에서 자립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만든다.

| 5

외교·안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교착 국면의 장기화로 한반도 평화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혁신적 병영환경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

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각 군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및 군구조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직업군인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국의 중심의 실용외교 및 공공외교 추진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국의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 대응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구축한다.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인류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실행함으로써, 당당하고 균형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다자·양자 간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고, ASEAN 및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함께 북방과 남방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 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는 유라시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안보 외교 구현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민과 국의 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첨단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입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개발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익과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리 신장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영사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민족문화교육을 통해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한인공동체의 연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6 통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공감대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 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지속 추진한다.

통일기반 조성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통합을 제고한다.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간다. 남북교류 활성화로 주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며, 범 국민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통일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 한다.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경제 실현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 분야별 협의체를 상설화·제도화하고, 민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토대로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다양한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한다.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협력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설정하여, 평화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7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감염병, 기후·환경 및 에너지·자원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한다. 기초과학, 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지역연구 개발 혁신 등 과학기술 발전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및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인의 경영 및 정책결정 참여를 장려하며 창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연구윤리 준수, 연구투명성을 제고하며, 연구자 및 현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청년·여성 등 신진연구자의 성장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해당 연구·기술 및

지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장기적 과제 등 의 연구와 사업화에 집중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임무지향형 장기연구개발 지원으로 전환한다. 신기술 규제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사회 변화 대비 및 디지털격차 해소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규제를 개선한다.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한다. 미래사회 변동에 대비하고 장기적 과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정책 수단개발을 장려하고, 공공조직을 혁신하며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를 제고한다.

개방형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산·학·연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8 기후·에너지·환경

지구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성장과 효율을 환경보전 및 사회 형평성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소비방식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달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에너지 수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의 토대가 되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시장 기능과 정책 간 조화를 통해 친환경 기술 상용화와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쓴다.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며, 석탄 의존도를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속도로 낮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구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회복력 증진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스마트한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 구축과 생태계 회복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생물종 감소·멸종, 대기·해양오염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화를 방지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탄소저감형 공간구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개발과 보전 간 조화를 추구하고 산림, 농업, 해양,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흡수를 증대시킨다.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주권 확보에 노력한다.

공정한 전환과 에너지 분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 지역, 산업의 고용과 생계보장, 교육·훈련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 강화

한반도 생태계 보전, 자연재해 방지, 산림녹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같은 남북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황사 등 동북아시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9

복지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 생애에 걸친 단절 없는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소득, 건강, 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소득보장, 건강보장, 노후보장을 기본 축으로 전 생애 과정에서 단절 없는 맞춤형 기본 생활보장 정책을 실현한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전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대한다. 돌봄, 배움, 일, 노후의 생활영역과 건강, 주거, 환경의 생활기반을 튼튼히 하는 다층적이고 통합적 기본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대 간 조화와 연대의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가족구조 및 가족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과 중앙-지방 간 균형복지

모든 시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부조제도를 내실화한다. 지방분권 확대에 맞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와 창의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건강권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제 확립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계층과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완화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춰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보건의료체제를 확립한다.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기반을 조성한다.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이 선도하는 안심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장애·빈곤·이주 아동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청년의 권리 실현과 지원 강화

청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취업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강화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이 쉽고 적정주거비를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 지역의 주거, 문화, 교육 등의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와 의사결정의 권한을 보장한다.

활기찬 노년과 안정된 노후 보장

노인의 건강과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와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연금체계를 공고하게 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도모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친화적인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

장애인 자활지원과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시민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장애인 연금 확대 등 경제적 자활지원과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필요에 기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이동권 보장과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권 강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 혐오행위를 금지하고,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과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 10 | 교육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팬데믹 시대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대전환을 실현한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든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저출생의 원인인 육아 부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교육을 보장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편적 교육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인 유보통합과 유아 의무교육을 달성한다. 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한다.

사교육 부담 없는 책임교육 실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사교육 부담이 없는 공교육 중심의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기후 변화와 지속적인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로부터 초래된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체계화한다. 교육자치와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여건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입시 중심 교육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교육으로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대학 교육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 달성

대학 교육대전환을 통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간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공공성·수월성·책임성·개방성을 강화한다. 지방대 위기 대

응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자원을 결집하여 대학의 교육을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대학 간 차별과 서열화, 사회 전반에서 학벌주의를 해소하여 능력에 기초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간다.

평생학습사회 실현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에도 지속이 가능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전 생애 누구나 원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개인이 산업구조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직업교육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이나 온라인교육 등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교육의 실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합리적인 경쟁의 규칙이 적용되는 공정한 교육과정의 보장, 배움의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학습의 결과를 보장한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반칙 없는 입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교육을 실현한다.

상생 교육 실현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개인이 더불어 성장하고, 지역이 협력하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함께 상생하는 교육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자치를 기초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협력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모든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이룬다.

11 성평등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여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여성이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다.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돌봄과 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남녀가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만든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 전 영역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 반영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구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여성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고위직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 공공부문의 성별 균형을 지향한다. 채용과 승진 상의 성차별, 성별임금격차 등 고용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한다.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젠더갈등, 혐오, 차별에 적극 맞서 사회전반의 평등을 견인하며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 남녀간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며 관련 교육과 활동의 질을 높인다. 남녀가 함께 일하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공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공적 돌봄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성·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한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별에 기반한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폭력 피해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여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 12 문화·체육·예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문화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문화·예술·체육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 발전시킨다. 문화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풍

요를 증진하고, 지구촌의 문화가 다양하게 교류되도록 한다. 예술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미래사회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가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문화

문화의 다양성, 포용성, 응집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확산시켜 개인의 행복한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예술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문화·예술·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일상과 지역에서의 생활문화에서 품격 있는 범국가적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다양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기반 한 문화적 참여를 지속하며 미래세대 문화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예술시장, 고부가가치 융복합콘텐츠 및 관광여가산업을 육성한다. 문화향유가 가능한 여가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적이고 감성적인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전통문화예술 보호와 국제문화교류 다원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호·증진하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보호 정신과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을 준수한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유·무형 문화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창작지원을 활성화한다.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며, 소통과 공존에 기반한 국제문화교류를 강화한다.

13 언론·미디어

국민의 정서적·정신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사회질서의 기틀

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국민 누구나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영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본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미디어의 공적책무를 강화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공영방송이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공급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미디어 이용자 권리 및 참여 강화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복지,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계층 및 지역적 차이 등에 기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 방안을 마련하여 포용적 사회를 건설한다.

상생하는 미디어생태계 구축과 미디어산업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미디어 산업 종사자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구조를 보장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다.

윤리규범

<윤리규범>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정 2015. 2. 3.]

[개정 2016. 7.13.]

[개정 2018. 1.17.]

[개정 2018. 7.25.]

[개정 2018. 8.17.]

[개정 2020. 8.29.]

[개정 2021. 5.24.]

[개정 2022. 1.18.]

[개정 2022. 4.1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책임있는 정치주체로서 강령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새롭게 변영하는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책무는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여 국가이익과 당의 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그리고 당원 모두는 사익 보다 공익에 우선하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규범을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개정 2020.8.29.>

제1조(목적)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주도하며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최고의 윤리기준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범은 당 소속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무위원 등), 당직자(중앙당과 시·도당의 정무직과 사무직 당직자) 등 당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강령·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① 당원은 강령·정책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윤리규범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의 의무를 다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는 윤리규범 취지와 실천방도에 관하여 규정된 교육을 받고, 윤리규범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①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례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당원은 당원간의 상호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①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시 고압적 언행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

⑦당원은 국가적 위기 또는 국가적 재난의 경우 등 사회적 자숙이 요구되는 때에 사행행위, 유흥, 해외여행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청렴의무)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을 수수할 수 없다.

제7조(성실의무)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선당후사와 국익 최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②당 소속 공직자는 국회 및 지방의회 관련 공직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당직자는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당무의 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의 소홀과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여 당에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무직당직자는 당내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출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리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민법상 친인척,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 특별배려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역무계약 또는 투자 등 이익 취득·도모를 돋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당해 기관의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13>
- ⑤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등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임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하고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3>

제10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퇴직한 후 재직 중인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의 수수 또는 사용권을 포함한 재산상 이익이나 접대·향응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치자금법 등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기부 및 후원은 예외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좌진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당한 금전을 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13.>

제11조(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윤리심판원에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민법상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 배정을 자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3.>

④ <삭제 2020.8.29.>

제12조(윤리기강 확립)

①당은 당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 규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당은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 당 규율 전반에 대한 감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을 둔다. <개정 2020.8.29.>

③윤리심판원은 당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명된 자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밀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국가의 기밀 및 당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밀자료 및 당의 보안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 ①당원은 성 비하 발언, 직·간접적인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피해자(피해 호소인을 포함한다)와 관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조사 및 처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피해 호소인을 포함한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확인을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해자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교육의무)

- ①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는 당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교육, 성평등교육, 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 윤리교육, 직무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9., 2021.5.24.>
- ②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사무직당직자 인사 등에서 당현·당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8.29.>

제16조(신고 및 조치)

- ①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감찰단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윤리감찰단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한다. <개정 2020.8.29.>
- ③신고를 받은 윤리감찰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0.8.29.>

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이 윤리규범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또는 관련 당규에서 정한다.

②이 윤리규범이 당내 다른 규정과 해석에 있어서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범에 따른다.

부칙 <2018. 8. 17, 제1호>

이 윤리규범은 2018년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29, 제2호>

이 윤리규범은 2020년 8월 29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4, 제3호>

이 윤리규범은 2021년 5월 24일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8, 제4호>

이 윤리규범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5, 제5호>

이 윤리규범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 헌

당 헌

- [제 정 2014. 3.26.]
- [개 정 2014. 4.13.]
- [개 정 2014. 4.23.]
- [개 정 2014. 5. 9.]
- [개 정 2014. 7. 8.]
- [개 정 2014. 7.31.]
- [개 정 2014. 9.21.]
- [개 정 2014.12.10.]
- [개 정 2014.12.19.]
- [개 정 2015. 2. 8.]
- [개 정 2015. 7.20.]
- [개 정 2015. 9.16.]
- [개 정 2015.12.14.]
- [개 정 2015.12.28.]
- [개 정 2016. 1.27.]
- [개 정 2016. 7.18.]
- [개 정 2016. 8.27.]
- [개 정 2016.10.19.]
- [개 정 2017. 5.15.]
- [개 정 2018. 3. 9.]
- [개 정 2018. 7.13.]
- [전면개정 2018. 8.25.]
- [개 정 2019. 7. 1.]
- [개 정 2020. 3.14.]
- [개 정 2020. 7.16.]
- [개 정 2020. 8.28.]
- [개 정 2020. 11.3.]
- [개 정 2021. 5. 2.]
- [개 정 2022. 1.12.]
- [개 정 2022. 1.18.]

[개정 2022. 4. 1.]
[개정 2022. 4.15.]
[개정 2022. 7.13.]
[개정 2022. 8.26.]
[개정 2023.12. 7.]
[개정 2024. 5. 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이라 하고, 약칭은 ‘민주당, 더민주’라 한다.

제2조(목적)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 혁신과 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개정 2022.8.26.>

제3조(조직과 운영)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 ②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 ③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 ④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제2장 당 원

제4조(자격)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
 2.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

<신설 2020.8.28.>

제5조(구분) ① 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권리당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당직을 보유하고 있고 당비체납이 없는 당원을 백년당원이라 한다.

② <삭제 2022.8.26.>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9.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 등을 당규로 정한다.

⑤ 합당과 해산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당비)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성평등 실현) ①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는 경우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르게 안분하도록 노력한다.

④본조의 실천 및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설특별기구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둔다.

⑤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는 성평등교육을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8.>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이 100분의 1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우리 당은 청년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청년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8.>

④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정치발전예산을 특별히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8.>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노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노인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

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 대의기관에 노동부문 당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재외국민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재외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재외국민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당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포상과 징계)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이 경우 우리 당의 당원인 자에 한한다.
15.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가. 총 규모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 나. 총 규모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1. 재외국민당원 중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개정 2021.5.2.>
22.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3. 대학생당원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200명 이하의 대의원
24.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5. <삭제 2020.7.16.>
26.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백년당원
③제2항제19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제19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 ⑤ 제2항제19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 ⑥ 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2항제22호 및 제24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10명 이상당 1명씩 배정하되, 지역, 직능, 부문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2. 제2항제23호의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 3개월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10명 이상당 1명씩 배정하되, 지역 또는 학교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 ⑦ <삭제 2020.7.16.>
- ⑧ 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 ⑨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전국대의원회대회에서 선출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특별당헌의 제정과 개폐
6.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

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①당무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8. 전국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차급의 장 중 1명)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1. 전국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개정 2022.8.26.>
23.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40명 이하의 중앙위원
24.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각 4명의 중앙위원
25.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의 중앙위원
26.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
27.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④제2항제21호의 중앙위원 추천은 당규로 정한 바에 따르되, 지역과 부문을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22호의 중앙위원은 해당 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200명 당 1명의 중앙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⑥제2항제20호부터 제27호까지의 중앙위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20호부터 제23호, 제27호의 추천 및 선임 중앙위원에는 여성 권리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청년 권리당원을 100분의 1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⑧제5항부터 제7항의 권리당원은 중앙위원 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이다.

제20조(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리 행사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4.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5.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6.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8.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2.8.26.>
 9.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리 행사
- ②제1항제1호의 권리 중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리은 당무위원회와 최

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의 권한 중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2.8.26.>

제21조(소집) ①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8.26.>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2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6. 중앙위원회 의장
7. 전국위원회 위원장
8. 사무총장
9.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중앙당후원회의 장 <개정 2020.8.28.>
1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1. 당헌 제33조의 상설위원회 위원장(세계한인민주희의의 경우 수석부의장) <개정 2020.8.28.>
12. 시·도당위원회 위원장
13. 당 소속 시·도지사
14.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각

1인

15. 원외지역위원장협의기구의 대표 1인
1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여성, 청년 등 5명 이하의 당무위원
③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개정안의 심의와 발의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6.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7.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9.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10.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
 11.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의 승인
 12.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13.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14.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15.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16. 당무활동 보고 요구
 17.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18.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소집 등) ①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소집한다.

③상임고문 및 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3.12.7.>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식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개정 2022.7.13., 2023.12.7.>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 최고위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③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3. 당대표가 선출될 때 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0.7.16.>
⑤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제26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4. 당대표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최고위원

- ③ 제2항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 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 ④ 제2항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잔여임기에 한해 당대표가 후임자를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 ⑤ 제2항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선출된 최고위원 중 비수도권 당선자가 없는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 <신설 2022.7.13.>

제27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4.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5.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6.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8.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9. 국회추천(선출)임명직공직자 추천에 관한 심의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8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등) ①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 ② 상임고문, 국회부의장, 정책연구소의 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괄한다.

- ② 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면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당 예산의 편성
 5.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 ③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④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다.
- ⑤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당대표 비서 실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당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불법·일탈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감찰활동을 위해 상시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둔다. 윤리감찰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1.5.2.>

- 제30조(상임고문과 고문)**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직 당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상임고문과 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31조(대변인)** ①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전국위원회

- 제32조(전국위원회)** ①성, 세대, 계층 등 사회적 계층 및 부문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4. 전국대학생위원회
 5. 전국장애인위원회
 6. 전국노동위원회
 7. 전국농어민위원회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9. 사회적경제위원회
 10. 소상공인위원회 <신설 2022.8.26.>
- ②전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헌·당규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상설위원회

제33조(상설위원회) ①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1. <삭제 2020.8.28.>
 2. 당무감사원
 3. 국가경제자문회의
 4.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5. <삭제 2022.8.26.>
 6.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7. 세계한인민주회의
 8. 국제위원회
 9. 전국직능대표자회의
 10. 민생연설회의
 11.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12. 당현당규강령위원회 <개정 2020.8.28.>
 13. 인권위원회
 14. 다문화위원회
 15. 교육연수원
 16. 재정위원회
 17. 예산결산위원회
 18. 청년미래연설회의 <신설 2019.7.1.>
 19. 인재위원회 <신설 2022.8.26.>
 20.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2022.8.26.>
- ②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헌·당규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특별위원회 등

제34조(특별위원회) ①특정한 상시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설특별위원회를 둔다.

②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거나 당세확장 등을 위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설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 및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인재영입기구) <삭제 2022.8.26.>

제36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를 위하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한다.

③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사무처

제37조(구성)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명 이하의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괄하고 당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사무직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은 일상적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 당무집행을 위하여 당무집행회의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당무집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중앙당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중앙당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정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급)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사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관련법인 및 국회직 등의 실·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④사무직당직자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제청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당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 규로 정한다.

제40조(정무직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거나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당직자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1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전국여성위원장
3. 사무부총장(인사담당)
4. 전략기획위원장
5. 원내 수석부대표
6.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7.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 중 1명
8. 사무처당직자 노동조합이 추천한 1명
9. 당대표가 추천한 1명

③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는다.

④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정책위원회

제42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외인사는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43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4.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5. 정책홍보 등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6. 당원발안 심사와 당원토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44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상임부의장,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다만, 부의장 중 약간 명은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정책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정책조정위원회) ①원활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당 규로 정하는 분야별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 한다.

제46조(상임분과위원회 등) ①정책위원회에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상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상임분과위원회는 해당 국회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임명하는 원외인사로 구성한다.
③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에 상응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간사가 맡는다.
④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국회상임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분과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후임자가 그 임기를 수행한다.
⑤정책위원회에 특수정책기획단, 정책자문기구, 정책평가기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법안심사위원회) ①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의장 아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법안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속 정책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정책조정회의) ①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둔다.

-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해당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소 차급의장 중 1명 및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정책조정회의 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 ④해당분야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9조(실무기구) ①정책개발, 자료수집, 당정협의와 기타 정책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②실무기구의 구성과 운영, 사무직당직자의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50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1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52조(소집 등) ①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원내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 한다.

- ③상임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1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 대표가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54조(임명직·당직 제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내, 원내의 선출직 이외에 다른 임명직 및 당직 겸임을 최소화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55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단,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원내대표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시작한다.

②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③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⑤원내대표 선출과 불신임투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권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괄한다.

②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 ③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원내부대표 지명 시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 ⑤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 ⑥원내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 제57조(정책연구소)**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연구소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장 중앙당후원회

- 제58조(지정)** ①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장 지방조직

- 제59조(독립성 강화)** ①우리 당은 시·도당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역분권형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② 시·도당의 당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6.>

제59조의2(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①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이하 ‘시·도당연석회의’라 한다)는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이다.

② 시·도당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시·도당위원장
5.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③ 시·도당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심의
2. 정국 및 당무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에 대한 예산 배분에 관한 심의
4.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④ 시·도당연석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⑤ 시·도당연석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26.]

제1절 시 · 도당대의원대회

제60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에 소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20.7.16.>

③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당대의원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제62조(권한)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 ②시·도당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3조(소집) ①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②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시·도당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당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2절 시 · 도당상무위원회

제64조(구성) ①시·도당의 의결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②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위원장
 2. 지역구국회의원
 3. 시·도당의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실버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다문화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개정 2022.8.26.>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6.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장단
 7.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위원
- ③제2항제7호의 시·도당상무위원은 시·도당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65조(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신설 2022.8.26.>

2.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3. 시·도당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포상안의 확정 <개정 2021.5.2.>
4. 당헌 제15조제2항제17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추천
5.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7.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8.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6조(소집)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시 · 도당 구성과 집행기구

- 제67조(위원장)**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괄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며, 시·도당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를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되며, 위원장이 직무대행 운영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퇴 등으로 인한 시·도당위원장缺의 시에는 직무대행 임명 또는 사고당부 확정 전까지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8.26.>
⑤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되며,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제6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실버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다문화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26.>

3. 시·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②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제69조(운영위원회 권리) ①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 시·도당 자치규칙 제·개정안의 발의 <신설 2022.8.26.>
7.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사무처 당직자의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사항은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70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시·도당에 상임고문과 고문,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실버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26.>

③시·도당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71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지역대의원대회) ①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 결기판이다.

②지역대의원대회는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지역상무위원회) ①지역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주요한 당무 처리기관이다. ②지역상무위원회는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74조(지역위원장) ①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합하며,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당헌 및 당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지역위원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신설 2022.8.26.>

제9장 윤리심판원

제75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심판원을 설치한다.

②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6조(중앙당윤리심판원 구성)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중앙위원회 직할로 두고, 심판원장과 2명 이상의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외부 인사를 심판원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판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외부 인사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당윤리심판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제1항의 외부 인사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의 추천으로 하여야 한다.

④중앙당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7조(중앙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벌안의 심사·의결 및 결정 <개정 2020.8.28.>
3.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 처리 등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윤리규범에 관한 교육
 5.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6.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7. 시·도당윤리심판원에 대한 감독
 8. 시·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한
 9.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사건의 경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
 10. 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0.8.28.>
- ③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제1항제9호와 관련된 심사기준과 방법은 중앙당윤리심판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시·도당윤리심판원 구성) ①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심판원장과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인사를 심판원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②시·도당윤리심판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③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시·도당윤리심판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 ④시·도당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9조(시·도당윤리심판원의 권한) ①시·도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8.28.>
 4.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은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개정 2020.8.28.>
-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써 확정하고,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8.28.>
- ④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⑤시·도당윤리심판원이 소속 당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시·도당위원장 및 중앙당윤리심판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예산과 회계

- 제81조(예산과 결산)** ①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 ③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디지털, 미디어, 홍보 등 미래업무(인사, 사업 등)에 중앙당 예산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 ④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주요 사업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 ⑥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⑦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 ⑧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82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장 및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⑥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 ⑦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11장 선거관리

- 제8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외부 인사를 포함해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선거관리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84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8.28.>
④ 선거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

규로 정한다.

제12장 공직선거

제1절 선거기구

제85조(선거대책기구 등)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③제2항의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 ④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련기구

제86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당대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외부 인사를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

④ <삭제 2021.5.2.>

⑤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8.28.>

제87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정원이 짹수일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정원이 홀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7조의2(전략공천관리위원회) ①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전략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③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89조의 제4항, 제5항, 제7항은 제87조의2로 이동 <2022.8.26.>]

제87조의3(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비례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③비례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90조의 제1항은 제87조의3으로 이동 <2022.8.26.>]

제3절 후보자 추천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9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종전 제89조의 제4항, 제5항, 제7항은 제87조의2로 이동 <2022.8.26.>]

제90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제87조의3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중 100분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4>

② <삭제 2020.3.14>

③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4>

④경제, 외교, 안보 등 위원회가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민공천심사단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14>

⑤당 취약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에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4>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90조의 제1항은 제87조의3으로 이동 <2022.8.26.>]

제91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

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한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⑤당대표는 제1항부터 4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시·도당과 협의를 거쳐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 선거구 수는 시·도별 해당 자치구·시·군의 장의 수가 10명 이하는 1,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2, 21명 이상은 3으로 한다.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2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3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③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④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⑦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4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5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7조부터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제4절 후보자 추천심사

- 제97조(심사기준)** ①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종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경선

- 제98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9조(가산기준)** ①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8.26.>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

- 보자, 청년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3. 청년후보자는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는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는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만 36세 이상부터 만 42세까지는 100분의 15를 가산하고, 만 43세 이상부터 만 45세까지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4.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의 경증장애인은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8.26.>
②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당규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1.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당적 불문).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2. 당규 제10호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거나 타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개정 2019.7.1>
 3.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개정 2022.8.26.>

제100조(감산기준) ①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후보경선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

②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 2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산한다. <개정 2019.7.1., 2023.12.7.>

1.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100분의 1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 수의 100분의 30을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개정 2023.12.7.>
2. 시·도지사, 자치구청장·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이 각급 지방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이 경우 시·도당 및 지역상무위

원회에서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도 동일 적용한다. <개정 2023.12.7.>

③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7.1>

1. 경선 불복 경력자 : 당규 제10호제38조로 정한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 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개정 2022.8.26.>
 2. 탈당 경력자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자. 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 2022.8.26.>
 3. 징계 경력자 :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④제3항제1호는 당헌 제84조제3항에서 규정한 후보자 자격 제한 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8년 동안 각급 선거에 적용한다. <신설 2022.8.26.>

제101조(중복적용금지 및 예외 등) ①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한다. 경선 가·감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례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확정시 함께 공표한다.

②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 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③제10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탈당 경력자 경선감산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8.28.>

제6절 재심 등

제102조(재심) ①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중앙당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시·도당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 발표시

점은 해당 위원회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 한다. 단, 전략공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0.8.28.>

② 제1항의 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당규로 정한다.

③ 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는 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 교체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3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① 당무위원회는 인준 요청된 자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는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공직선거 후보자 인준요청이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4조(재추천) ①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등록기간 촉박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무효화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제105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③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④ 당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

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책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4장 자치분권

제106조(자치분권정책협의회) ①자치분권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대표 직속으로,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 위원장 직속으로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둔다.

②자치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기초의회의원협의회를 둔다.

③자치분권정책협의회 및 각급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장 당헌 개정 등

제107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08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또는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9조(특별당헌) ①당헌 제16조제1항제5호의 특별당헌은 당헌으로 제정과 개폐의 권한을 별도로 정한 당헌의 특정 조항을 말한다.

②특별당헌의 제정 및 개·폐의 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호의 대의원 투표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2호의 중앙위원 투표는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호와 제2호의 권리당원의 투표는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재적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만 인정한다.
- ③특별당헌은 다른 당헌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110조(당규의 제정 등) ①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④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⑤제23조제1항제5호 및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 제2호(별지 서식)에 한해 개정할 수 있다.

제111조(특별당규) ①당헌 제16조제1항제6호의 특별당규는 당헌으로 제정과 개폐의 권한을 별도로 정한 당규를 말하며, 규정 전문 또는 당규의 특정 조항을 특별당규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당규 제·개정안의 발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 또는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요구로 발의된다.

③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의 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삭제 2019. 7. 1>

4. 제1호와 제2호의 권리당원 투표는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

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당해 재적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만 인정한다.

④특별당규는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12조의2(시행세칙 및 자치규칙) 각급 기구의 시행세칙 및 시·도당 자치규칙 등이 당헌·당규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사무총장이 수정을 지시한다.

[본조신설 2022.8.26.]

제112조의3(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험위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헌 제25조제3항제3호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중앙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를 관리한다.

④제2항의 권한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정기 및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8.26.]

제16장 합당과 해산

제113조(합당과 해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장 보칙

제114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대의원대회 등을 개의할 경우 출석의 방법은 온라인투표 참여로 한다.
<개정 2020.7.16.>

③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15조(표결)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참석자가 없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6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18. 8.25, 제1호>

이 당헌은 201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1, 제2호>

이 당헌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14,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1대총선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출관련 경과조치) 2020년 2월 20일 당무위원회에서 개정된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선출규정)은 이 당헌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16, 제4호>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28, 제5호>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3,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당원투표에 관한 특례) 당헌 제96조 개정 여부를 위해 2020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전당원투표의 경우 당헌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5.2, 제7호>

이 당헌은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2,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징계경력자의 경선감사의 경우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2022. 1.18,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 1인을 최고위원으로 포함하여 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명 이하의 합당 전 열린민주당 당원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3.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하의 합당 전 열린민주당 당원을 포함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한다.
4.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에서 승계된 당원은 탈당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에서 승계된 당원 중 징계경력자의 경선감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효력) 제2조제1호~3호는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제4~5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2. 4. 1,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장에 관한 특례)** ①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 직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인준으로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까지 당헌 제27조에 의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②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까지 당헌 제29조에 의한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

부칙 <2022. 4. 15,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로운물결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명 이하의 합당 전 새로운물결 당원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명 이하의 합당 전 새로운 물결 당원을 포함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한다.
3.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결에서 승계된 당원은 탈당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결에서 승계된 당원은 징계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대상에서 제외 한다.
5. 제3~4호에 따라 경선 감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99조의 경선 가산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제3조(효력) 제2조제1~2호는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제3~5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2. 7.13,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관련 경과조치) 2022년 7월 6일 당무위원회에서 개정된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65조(결과의 합산)은 이 당헌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8.26, 제13호>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 7, 제14호>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제100조제3항제2호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더불어민주연합 입당에 따른 탈당 경력에 한해 경선 감산을 적용하지 않고 가산은 당현당규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당헌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등 해당 행위의 전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